

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이의제기 요지

- '18.4.30.(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 규제 개요 및 도입 현황

- (규제개요) 中 환경부는 폐지 등 **24종의 고품폐기물 수입을 금지**(17.12.31일 시행)
 - 금지대상은 생활폐기플라스틱, 바나듐광재, 종이폐기물, 섬유폐기물 4개 분류 **24종(붙임1)**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16년 83백만불 수출
 - 그 외 수입 폐기물(제련슬래그, 스크랩, 폐전동기, 압축된 폐자동차 등)에 대해 불순물 허용기준을 강화한 **관리규정(표준)* 11종(붙임2)**도 '18.3월 시행
 - * CHN/1211('17.7월, 폐기물 수입금지목록), CHN/1224~1234('17.11월, 폐기물 개별규칙)
- (WTO TBT 위원회 동향) 지난 3월 WTO TBT委(3.20~22, 스위스)에서 美, EU, 日 등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특정무역협안* 제기 등 국제 이슈화
 - * ① 수입금지 폐기물 목록, ② 수입폐기물 환경보호 표준(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 해외 이해관계자에 제공된 의견수렴기간 부족(2일/WTO 권고 60일)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규제적응을 위한 시행유예를 요청
- 중국은 폐기물 수입금지는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완화·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

2. 주요내용 및 우려사항

- 폐기물 수입금지 24종 중 종이, PET 등은 재활용 자원으로서 해당 제품들의 유해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 규제적용이 과도함
 - (과학적 근거) 24종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선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 요청

- 원자재로 수입되는 고품폐기물 11종의 불순물 허용치 기준이 타 국가 대비 과도함
 - * 폐지의 불순물 최고허용치의 경우 유럽기준(EN643 표준)은 1.5%인데 반해 중국은 0.5%로 과도함
 - (과학적 근거) 원자재 11종 불순물 최고허용치(붙임2)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 요청

[불순물 최고허용치 기준 비교 (예시)]

국가	기준치	관련 규정
중국	해당 불순물의 총 중량은 수입되는 폐기물 중량의 0.08~0.5% 이하	CHN/1224~1234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물 개별규칙, 붙임2)
대한민국	기준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럽	불순물 허용치는 총 중량의 1.5% 이하(종이의 경우)	유럽폐기물기본지침(Directive 2008/98/EC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EN643 (Paper and board - European list of standard grades of recovered paper and board)

- 수입 금지된 24종 폐기물 및 그 외 11종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 중국 및 해외에서의 규제 적용에 차별우려
 - (비차별) 24종 수입금지 폐기물 및 그 외 11종 수입폐기물 규제가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하고 내국민대우 요청
 - * TBT 협정문 2.1조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
- (절차상 하자) 해외 이해관계자에 제공된 의견수렴기간이 부족*하므로 최소 60일의 의견수렴기간 제공 요청
 - * CHN/1211의 통보일(2017.07.18.)과 의견수렴 마감일(2017.07.20.)은 불과 이틀 차이
- (시행유예) 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기술규정의 공포와 발효사이에 합리적 시차 제공 요청
 - * 의견마감일과 시행일('17.9.1.)은 불과 40 여일에 해당하므로 TBT 협정문 2.12조 위배

3. 시사점

- **(화학제품 수요 증가)** 재활용된 제품의 수요가 일반 제품의 수요로 전환되면서 폐플라스틱 수입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 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재활용 대책마련)** 동 규제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폐기물들이 중국에서 재활용되는 대신에 쓰레기 매립지에 매각, 소각될 것으로 보이며 폐지, 폐플라스틱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활용 대책 마련 필요

붙임 1

중국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목록

번호	유형	세관상품번호	폐기물 명칭
1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3915100000	에틸렌 폴리머의 스크랩 및 부스러기
2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필름
3		3915200000	스틸렌 폴리머의 스크랩 및 부스러기
4		3915300000	염화비닐 폴리머의 스크랩 및 부스러기
5		3915901000	PET의 스크랩 및 부스러기(폐PET 음료병(병들) 불포함)
6			폐PET 음료병(병들)
7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의 스크랩 및 부스러기(폐컴팩트디스크 조각 불포함)
8			폐컴팩트디스크 조각
9	바나듐 폐기물	2619000021	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바나듐 든 찌꺼기, 용재, 5산화바나듐 함량>20% (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입자형 용재 제외)
10		2619000029	기타 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바나듐 든 찌꺼기, 용재 (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입자형 용재 제외)
11		2620999011	기타 금속 및 화합물을 포함한 광재, 광회 및 찌꺼기, 5산화 바나듐>20% (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것 제외)
12		2620999019	기타 금속 및 화합물을 포함한 광재, 광회 및 찌꺼기, 10%<5산화바나듐20%(강철 제련에 발생하는 것 제외)
13	선별하지 않은 폐지	4707900090	기타 회수종이 또는 판지(선별하지 않은 폐분쇄품 포함)
14	폐방직원료	5103109090	기타 동물 잔털에서 떨어진 털
15		5103209090	기타 동물 잔털 폐기물(폐방직실 포함, 재활용섬유 불포함)
16		5103300090	기타 동물 거친털 폐기물(폐방직실 포함, 재활용섬유 불포함)
17		5104009090	기타 동물 잔털 또는 거친털의 재활용섬유
18		5202100000	폐솜 방직실(폐면실 포함)
19		5202910000	솜의 재활용섬유
20		5202990000	기타 폐솜
21		5505100000	합성섬유 폐기물(떨어진 솜, 폐솜 및 재활용섬유 포함)
22		5505200000	인조섬유 폐기물(떨어진 솜, 폐솜 및 재활용섬유 포함)
23		6310100010	새롭거나 사용하지 않은 방직재료로 만든 선별을 거친 조각직물 등(새롭거나 사용하지 않은 폐실, 끈, 삭, 로프 및 제품 포함)
24		6310900010	새롭거나 사용하지 않은 방직재료로 만든 기타 조각직물 등(새롭거나 사용하지 않은 폐실, 끈, 삭, 로프 및 제품 포함)

붙임 2

중국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 규제 품목 및 규제명

통보문 번호	규제품목 및 규제명	불순물 최고허용치
CHN/1224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제련 슬래그	0.5%
CHN/1225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종이 또는 판지의 조각 및 폐기물	0.5%
CHN/1226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목재 및 목제품 폐기물	0.5%
CHN/1227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철 및 강철의 폐기물 및 스크랩	0.5%
CHN/1228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비철금속 스크랩	0.5%
CHN/1229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폐전동기	0.5%
CHN/1230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폐 전선 및 케이블	0.5%
CHN/1231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금속 및 전기기구 스크랩	0.5%
CHN/1232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해체용 선박과 기타 부유구조물	0.08%
CHN/1233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	0.5%
CHN/1234	원자재로 수입된 고품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 관리기준 — 압축된 폐자동차 스크랩	0.3%

□ **2017년 제3차 STC**

- (일본 질의) 중국의 공중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당 규제의 목적을 인정하지만 규제가 세계무역과 자원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 대한 우려를 표명
 - 규제 세부사항 및 해당제품 범위에 대해 문의함
 -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내국민대우 요청)
- (미국 질의) 규제의 불명확성 및 범위의 모호함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함
 - 4개 분류(classes), 24개 종류의 세부 범위사항 요청
 - 범위 : 종이 및 플라스틱 등 폭넓은 범위가 포함되는지, 혹은 좁은 의미에서 폐기물을 포함하는지 및 산업폐기물이 포함되는지
 - 관련 제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규제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체적 수입규제가 아닌 특정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보았는지 의문이 듦
 - 충분한 의견수렴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규제시행 중단을 요청
 - G/TBT/9 Annex 3의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60일 의견수렴기간을 요청함(통보문에서 명시한 시행일은 2017.09.01.로서 통보일 후 45일임)
 -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 개정을 요청함
- (EU 질의) 짧은 의견수렴기간으로 인해 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음
 - 통보일(2017.07.18.)과 의견수렴 마감일(2017.07.20.)이 단 이틀 차이이며, 중국은 요청한 의견수렴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

- 해당규제가 중국어 원문으로만 제공되어 해당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공식 번역본 요청
 - 규제 준수기간이 국내외 관계자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요청
 - 수입종이의 순도를 1.5 %에서 0.3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환경적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함(널리 사용되는 EN643은 1.5 % 사용)
 - 만약 특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1.5 %로 유지되어야 할 것
 - EU는 중국의 규제 목적을 이해하나, 시행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산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함
- (호주 질의) 중국의 규제목적은 이해하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 이 규제가 시행된다면 많은 폐기물 들이 중국에서 재활용되는 대신에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질 것
 - 규제 세부사항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바람(제품 분류방법, 국내외 규정이 동일한지)
 - TBT협정문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적절한 적응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연기 요청
- (캐나다 질의) 해당제품 세부사항 및 규제 개정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요청
- 해당 규제가 재활용산업 관련 제품에도 해당되는지 문의
 - 그동안 재활용원료에 대한 캐나다-중국 간 무역은 상호간 이익이 되었음(캐나다는 중국처럼 효율적으로 해당 재료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고 중국 기업에게는 해당 재료가 중요한 원재료로 사용되었음)
 - 이 규제로 인해 중국 처리업체들이 해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중국 답변) 현재 정책 프레임워크(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정책)를 위해 여러 개의 규제가 채택되었으며, 이 규제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2017.07.18.에 중국은 이 규제를 통보하였으며,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였음
 - 기존 초안에서 개정된 최종본이 있음
 - 2017.12.31.부터 시행 예정으로서 6개월 간의 규제준수 적응 기간을 관련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
 - 해당제품 범위가 세부적으로 설명됨

붙임 4 중국 고형폐기물 GB표준 관련 타국가의 이의제기 현황

□ 2018년 제1차 STC

- (EU 질의) 11개의 신규 규제가 2018.3.1. 시행 예정이며 중국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의견수렴기간이 30일이었으므로 TBT협정문에서 명시하는 적절한 의견수렴기간보다 짧음
 - 시행일 까지 14주는 신규규제 준수 시행준비기간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합리적 근거 제시 바람(과학적 근거, 불순물 최고허용치, 폐기물 종류)
-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강제vs.임의) 문의
-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적으로 덜 제한적인 규제를 고려하였는지 문의
- (미국 질의) 지난 17년도 3차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내용 재차 제기
 - 중국이 진행 중인 규제시행을 즉시 중단 요청
 - 과학적 근거 제시
 -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 개정 요청
 - 60일 의견수렴기간 요청 및 6개월의 준비기간 요청
 -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적으로 덜 제한적인 규제를 고려하였는지 문의
- 호주 제기내용
 - 목적은 이해하나, 이 규제로 어떻게 규제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
 - 기술적 과학적 근거 제시 요청

-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무역규제로 보임
-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주어지지 않음
- 일본 제기내용
 - 내국민 대우 요망
 - 의견수렴기간 부적절함
- 캐나다 제기내용
 - 중국의 목적을 이해하나 중국 수입자 및 캐나다 수출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허용치 등이 국제표준과 비교하여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확인 요청
- (중국 답변) 중국은 이 규제를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을 진행할 예정임(중국 시진핑 주석이 규제 시행에 적극적임)